

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제1항 및 동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, 이사불명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,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06월 16일

홍 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

1. 건 명 :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

2. 근 거 :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
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3. 공고대상 :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

4. 공고기간 : 2023년 06월 16일 ~ 2023년 06월 30일까지(15일간)

5. 공고내용 :

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, 이사불명, 주소불명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 만약,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033-430-9127)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 부과)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.

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

○ 문의전화 :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담당(TEL : 033-430-9127)

○ 주 소 :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(Fax : 033-434-9995)

○ 위반차량 내용 확인 사이트 : <http://www.roadfine.go.kr>

과적(과태료)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차량번호	송달불능사유	과태료 금액	발송 주소지
1	최영식	1971.01.18	경기80자 1453	폐문부재	400,000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, 107동906호 (안녕동,아름마을신한미지엔아파트)
2	최영식	1971.01.18	경기80자 1453	폐문부재	560,000	경기도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7, 107동906호 (안녕동,아름마을신한미지엔아파트)
3	양홍수	1971.01.09	강원07고 5956	주소불명	2,400,000	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16, (원주크레인)
4	장명구	1982.08.09	강원83바 1243	폐문부재	800,000	충청남도 보령시 구시10길 18, A동206호 (대전동)
5	김명환	1968.02.18	강원06로 6370	보관기간경과	800,000	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153-6
6	이강복	1959.12.03	98보9479	보관기간경과	240,000	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68, 215동1101호 (퇴계동,퇴계(2)주공아파트)
7	김명환	1968.02.18	강원06로 6370	보관기간경과	800,000	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마골길17
8	박신원	1972.10.29	강원06모 8810	우편수취함	400,000	강원 영월군 주천면 뒷별길 8

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

